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26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나4147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2658 판결

전문

원 고 A장애인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한창재

피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 2019. 11. 19.

판결 선고 2020.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97,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2019. 11. 12. 'A장애인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등록하였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속 활동보조인 D 등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속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13. 1.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69,975,270원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자이던 E은 이로 인하여 2016. 6. 30.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038사건에서 사기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016. 9. 23. 부산지방법원 2016노2505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1590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6. 7. 13. 원고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한 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수급한 급여 69,975,270원 및 이자 1,286,101원을 포함한 합계 70,514,060원에 대한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6. 7. 27.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수급한 급여액 중 41,997,332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부산광역시청,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대표자인 E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한 급여비용 41,997,332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는 E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며 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E이 위 41,997,332원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E 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1,997,332원을 환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41,997,33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16.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고의 대표자 E이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0. E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15. 'E이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 합계 26,806,610원을 생활비,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이 위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기가 E이 이미 처벌받은 제1항 기재 사기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범함 시기와 일부 겹쳐, E이 편취한 금원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금원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편취한 금원과 별개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41,997,332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은, E이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 합계 26,806,610원을 생활비 등으로 횡령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E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비용 69,975,27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환수결정에 기하여 2016.7. 27.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수급한 급여액 중

41,997,332원을 환수한 점, E은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비용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결정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유효한 이 사건 환수결정에 기하여 위41,997,332원을 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